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마련

□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소매금융 부문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으나, 불건전한 대출모집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'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'을 마련함.

- o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으로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에 의해 적절한 규제를 받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와는 달리 금융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.
- o 이로 인해 대출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및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이 취약하고 고객정보 유출,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□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는 1사 전속 원칙을 강화하고 각 협회들이 월 1회 이상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, 이를 위반 시 2년간 등록 취소 및 타업권에서의 영업도 불허함.

- o 앞으로는 매월 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, 정기교육도 매년 1회씩 받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함.
- o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·허위광고 등의 부당영업을 금지,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의 종합 고객 DB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함.
- o 아울러 금융회사로 하여금 '대출모집인 관리 기준'을 마련하여 모집인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한편,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권을 행사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임.

□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'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'을 마련해 금융회사 및 권역별 협회로 발송하고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.

- o 아울러 현장검사 등을 강화하여 대출모집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예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임.

('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' 마련 및 시행,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외, 2/16)